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30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신성범·김종양·송언석

이종배 • 조은희 • 인요한

박정하 • 이성권 • 서일준

한기호 · 김상욱 의원

(총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등 실태조사, 철거·매입 등을 통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제공이 어려우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어촌의 빈집의 활용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 민박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현행 주택 소유자 거 주요건을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빈집정보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 경영을 위한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농어촌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6 및 제86조).

법률 제 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할"을 "해당 빈집우선정비구역을 관할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단독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			
축·운영) ① <u>시장·군수·구</u>	축·운영) ① <u>농림축산식품부</u>			
<u>청장은</u>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u>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u>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빈				
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				
축・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군수·구청장은</u> 빈집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u>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	해양수산부장관은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				
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u>시장·군수·구청장은</u> 빈집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u>			
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	해양수산부장관은			
하는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				

게 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 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 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 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우선정비구 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 경 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 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생략)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저

- ① (생략)
-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

<u>.</u>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
<u>해당 빈집우선정비</u>
구역을 관할하는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⑦ (현행과 같음)
세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생략)
-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 <삭 제> 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 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 받은 자는 제외한다)
-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 <삭 제>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 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 는 단독주택

③ ~ ⑨ (생 략)

1. (현행과 같음)

--「건축법」 제2조제2항제1 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 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 다)

③ ~ ⑨ (현행과 같음)